

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2377호)

- 의안번호 제2377호 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 - 행정안전부로부터 “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계획”을 통보받아,
 - 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」 제2조제1항제2호의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용어 정의 부분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